정 관

학교법인 일 신 학 원

정관연혁

학교법인 일신학원

연번	인가년월일	변경내용	인가근거	비고
1	'67. 7.24	법인설립허가	문보행 1042.1	'67. 7.24설립등기필
2	'73.10.12	제2조 변경	교행 1042.3	
3	'73.12.11	제31조 변경	관리 1042.3	
4	'75. 5. 6	제41조 변경	관리 1040-293	
5	'75.10.17	제28,33,35조 35조의 1 신설	관리 1042.3-905	
6	'76.10. 6	제4,10,12,14,28,29,30,31조 변경		
7	'77. 9.19	제12,42,43,44조를 제52,53,54조로, 제42,43,44조 및 제45,46,47,48,49,50,51조를 신설	관리 1042.3-715	
8	'80. 9. 2	제12,14조 1,3항 변경	관리 1042.3-668	
9	'81. 4.13	제44조 별표 1 정원 및 직제 변경	관리 1042.3-550	
10	'81. 7.29	정관준칙에 의한 변경	관리 1042.3-470	
11	'83.11.11	제10조,23조2항,제35조 변경	관리 1042.3-745	
12	'85. 2.13	제13조 변경	과리 25412-135	
13	'86.10.13	제16조2항 변경		
14	'90. 3. 1	제77조 변경	관리25422-74	
15	'91. 1. 9	학교법인 정관준칙에 의한 개정	관리 2542-422	
16	'93. 7. 2	별표 2 변경	행정 81421-421	
17	'94. 4.18	34조의2, 40조의2 신설	행정 81422-282	
18	'95. 2.23	40조의2 변경, 67조의2 신설, 72조, 77조 변경	행정 81422-140	
19	'95. 9. 7	제52조내지 제65조 삭제, 제71조 변경	행정 81422-628	
20	'96.10.17	제40조의2 신설 및 변경	행정 81422-880	

정관연혁

학교법인 일신학원

연번	인가년월일	변경내용	인가근거	비고
21	'96.10.27	제7조,10조,16조,34조의1,34조의3,35조,48조,74조,76조,78조,79조,80조,81조 신설 및 변경	학운 81422-1595	
22	'00. 6.12	제13조 변경	학운 81422-826	
23	'00. 7.15	제78조,79조,80조 변경	학운 81422-1018	
24	'01. 1.30	제43조 변경, 제81조,제82조,제83조 신설 및 조번호 변경	학운 81422-124	
25	'03. 2.26	제67조의1 변경	학운 81422-353	
26	'03.12.3	제67조의 1 '대우직원 선발'	학운 81422-2220	
27	'05.09.20	사학의 건학정신에 의한 변경	학운-11056	
28	'08.02.20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변경	학운-13823	
29	10.11.22	제67조의3명예퇴직.제67조의4 특별승진	행정예산과-6588	
30	12.09.01	정관의 변경 및 퇴직교원의 기간제교원 임용 삭제		
31	13.05.28	일신학원 주소변경		
32	14.03.01	기능직 직제변경		
33	14.07.01	제4조, 제29조, 제32조, 제33조, 제35조,제36조, 제66조, 제67조 1항, 제72조 변경 및 신설		
34	16.09.01	제34조, 제38조 1항, 3항, 제39조, 제68조 변경 및 제35조 12호, 제36조 11호 신설		

학교법인일신학원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법인은 대한민국 교육 이념과 기독교학교 교육헌장에 입각하여 기독교 정신으로 국가사회 및 교회에 봉사하는 민주시민을 양성하기 위하여 중등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단 건학이념을 구현하는데 필요한 교육과정은 따로 정한다. (변경 2008. 2. 20)

제2조 (명칭)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측) 충북노회와 충청노회(이하 설립자 측)가 설립한 이 법인은 학교법인 일신학원(이하 "법인")이라 한다.(변경 2008. 2. 20)

제3조 (설치학교)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설치 경영한다.

1. 일신여자중학교
2. 일신여자고등학교

제4조 (주소) 이 법인은 사무소를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영운로 126에 둔다.(변경 2008. 2. 20, 2013. 5. 28, 2014. 6. 30)

제5조 (정관의 변경) 이 법인의 정관의 변경은 설립자 측에 보고한 후 이사 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충청북도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변경 2012. 9. 1)

제2장 자산과 회계

제1절 자산

제6조 (자산의 구분) ① 이 법인의 자산은 기본재산과 보통 재산으로 구분하되 기 본재산은 교육용 기본재산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변경 1976.10.6)
② 기본재산은 별도의 대장으로 관리하는 재산과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및 기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정하는 재산으로 한다.(변경2008. 2. 20)
③ 보통 재산은 제2항에서 정하는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7조 (재산의 관리) ①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를 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설립자측에 보고한 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용도 변경 또는 담보의 제공가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관

할청에 신고하여야 한다.(변경 1999. 10. 27, 2008. 2. 20)

② 기본재산과 보통 재산의 운영과 관리에 관여하는 법령과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8조 (경비와 유지 방법) 이 법인의 경비는 기본재산에서 나는 과실 및 수익 사업의 수입과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2절 회계

제9조 (회계의 구분) ① 이 법인의 회계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한다.

② 법인 회계는 일반회계와 수익 사업 회계로 구분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당해 학교 의장이 집행하고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는 이사장이 집행한다.

제10조 (예산외의 채무 부담) 이 법인의 의무 부담 또는 권리 포기는 이사회의 의 결을 거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의무부담 또는 권리포기가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관할청에 신고하여야 한다.(변경 1976.10.6, 1983.11.11, 1999.10.27)

제11조 (세계 잉여금의 처리) 이 법인에 속한 회계의 매년도 세계 잉여금은 차입금의 상환과 익년도에 이월 사용하는 분을 제외하고는 적립하여야 하며 이 적립금은 기본재산으로 한다.

제12조 (회계년도) 이 법인의 회계년도는 3월1일부터 익년 2월말까지 한다.

제12조의 1(예·결산 보고 및 공시) ① 법인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산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에는 결산을 관할청에 보고하고 공시 하여야 한다.(신설)

② 제9조1항에 회계는 당해학교 홈페이지에 1년간 공개하되,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5일 이전까지, 결산은 매 회계년도 종료 후 3개월 이내로 한다.(신설)

제3절 예산. 결산 자문위원회(삭제)

제12조의 1 (삭제 2008. 2. 20)

제12조의 2 (삭제 2008. 2. 20)

제12조의 3 (삭제 2008. 2. 20)

제12조의 4 (삭제 2008. 2. 20)

제12조의 5 (삭제 2008. 2. 20)

제12조의 6 (예산·결산의 공개) 제9조1항의 회계는 당해 학교 홈페이지에 1년간 공개하되,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5일 이전까지, 결산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한다.

제3장 기 관

제1절 임원

제13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이 법인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변경 1985. 2. 13, 2000.6.12)

이사 : 11인(이사장 1명 포함)　　감사 : 2인

제14조 (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최초의 임원 반수의 임기는 그 임기의 반으로 한다.(변경 1975.5.6, 1976.10.6)

1. 이 사　4년
2. 감 사　3년 단 1회에 한하여 중임 가능(변경 2008. 2. 20)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5조 (임원의 선임 방법) ①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이 경우 임원의 성명, 나이, 임기, 현직 및 주요경력 등 인적사항을 학교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하여야 한다.(변경 2008. 2. 20)

② 임기 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한다.

③ 이 법인의 유지 경영하는 고등학교장은 당연직 이사로 한다.

④ 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⑤ 임원의 선임은 임기 만료 2개월 전에 하여야 하며 늦어도 임기 개시 1개월 전에 관할청에 취임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5조의 2 (개방이사의 자격) 이 법인의 개방 이사는 설립자 측 소속 교회의 목사, 장로로 한다.(신설 2008. 2. 20)

제15조의 3 (개방이사의 정수) 이 법인의 개방 이사의 수는 3명으로 한다.(신설 2008.2.20)

제15조의 4 (개방이사의 선임) ① 이 법인은 개방이사의 선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재직이사의 경우 임기만료 3월전)에 개방이사 추천위원회(이하 "추 천 위원회"라 한다)에 개방이사 선임 대상자를 추천 요청하여야 한다.(신설 2008. 2. 20)

② 법인은 개방이사 선임 대상자를 추천 요청할 때 15조의 2에서 정한 자격 요건을 함께 제시한다.(신설 2008. 2. 20)

③ 법인으로부터 추천 요청을 받은 추천위원회는(각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견

을 골고루 반영하여) 30일 이내에 대상인원의 2배수를 추천 하여야 한다. 다만 동 기간 내에 추천이 없을 시에는 법인은 관할청에 추천을 요청한다.(신설 2008. 2. 20)

제15조의 5 (추천위원회)

① 추천 위원회는 일신여자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에 둔다.(신설 2008. 2. 20)

② 추천위원회 위원 정수는 7인으로 하고 그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08. 2. 20)

1.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자 4인(일신여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2인 및 일신여자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2인)(신설 2008. 2. 20)
2.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자 3인(신설 2008. 2. 20)

③ 추천위원회의 의장은 위원회의 호선으로 선출한다.(신설 2008. 2. 20)

④ 그 밖의 추천위원회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추천위원회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신설 2008. 2. 20)

제16조 (임원 선임의 제한) ① 이사 정수의 반수 이상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변경 1999.10.27)

②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각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 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정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변경 2008. 2. 20)

③ 이사 정수의 3분의 1이상은 교육 경험이 3년 이상 있는 자라야 한다.(변경 86.10.13)

④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⑤ 감사 중 1인은 추천위원회에서 단수 추천한 자를 선임한다.(신설 2008. 2. 20)

⑥ 제5항의 감사 추천 등에 대하여는 제15조의 4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2008. 2. 20)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신설 2008. 2. 20)

1. 관할청으로부터 임원 취임 승인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자 (신설 2008. 2. 20)
2. 사립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 파면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자 (신설 2008. 2. 20)
3. 관할청의 요구에 의해 학교의 장에서 해임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자 (신설 2008. 2. 20)

제17조 (이사장의 선출 방법과 그 임기) ① 이사장은 이사의 호선으로 선출하여 취임한다.

②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삭제 2008. 2. 20)

제18조 (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리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는 사항을 처리한다.

제19조 (이사장 직무대행자 지정) ①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이사장이 궐위 되었을 때는 이사회에서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 직무 대행자로 지명된 이사는 지체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20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대행한다.

1. 법인의 재산 상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검사 결과 부정 또는 불비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 이를 이사회와 관할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법인의 재산 상황과 회계 또는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장 또는 이사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21조 (임원의 겸직 금지) ① 이사 및 감사는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원, 기타 직원 및 학교의 장을 겸할 수 없다.(변경 2008. 2. 20)

② 감사는 이사장 이사 또는 학교법인의 직원(당해 학교의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의 교원, 기타을 포함한다)을 겸할 수 없다.(변경 2008. 2. 20)

제2절 이사회

제22조 (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 등) ① 이사회는 이사로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법인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장 및 교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6. 학교의 경영에 관한 중요 사항
7. 수익 사업에 관한 사항
8. 기타 법령이나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3조 (이사회의 개최 및 의결 정족수) ① 이사회는 이사 정수의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최하지 못한다.

② 이사회의 의사는 정관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 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 부결된 것으로 한다.(변경 2005.09.20, 2008.02.20)

제24조 (이사회 의결 제척 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임원 및 학교의 장의 선임과 해임에 있어서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임원 자신이 법인과 직접 관계되는 사항

제25조 (이사회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장 또는 이사장 직무대행이사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집합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개최를 요구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25조의 2 (이사회 회의록 공개) ① 이사회는 회의 종결 후 10일 이내에 당해 회의록을 학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3월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사립학교법시행령 제8조의 2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신설 2008. 2. 20)

②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이사회 회의록을 공개하지 아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이사회에서 회의록의 공개여부 및 공개 범위 등을 의결하여야 한다.(신설 2008. 2. 20)

제26조 (이사회 소집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7일 이내에 회의 소집 통지를 하여야 한다.

1. 재적 이사 과반수 이상이 회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20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 할 때에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3절 사학윤리위원회

제26조의 2(사학윤리강령 준수) ① 이 법인은 법인 및 학교운영에 있어 "사학윤리강령"(별표 2)을 준수한다.

② 이 법인 및 유지 경영하는 학교의 투명한 운영을 위하여 사학윤리위원회 활동에 협조하고 그 결정사항을 준수한다.

제4장 수익사업

제27조 (수익사업의 종류) 이 법인이 설치하여 유지 경영하는 학교의 운영을 위하여 사업을 한다. 사업 종류는 별도로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28조 (수익사업의 명칭) 제27조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일신기업 공사를 경영한다.(개정 75.10.17, 76.10.6)

제29조 (수익사업체의 주소) 일신기업 공사의 사무소는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영운로 126에 둔다.(변경 2008. 2. 20, 2014.6.30)

제30조 (관리인) ① 제28조의 규정된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인의 임용, 복무, 보수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정한다.

제5장 해 산

제31조 (해산) ①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설립자 측에 보고한 후 이사 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충청북도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변경 1973.12.11, 2008. 2. 20)

제32조 (잔여 재산의 귀속) 이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 재산은 합병 및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육부장관에 대한 청산 종결의 신고가 종료된 후 설립자 측에 귀속된다.(변경 1975.10.17, 2008. 2. 20, 2014.6.30)

제33조 (청산인) 이 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청산인은 해산 당시의 이사 중에서 선출하되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변경 1975.10.17, 2014.6.30)

제6장 직 원

제1절 교원

제1관 임용

제34조 (임용) ①이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의 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한다.(그 임기는 4년으로 한다. 다만, 1회 재임할 수 있다.)(변경 2016.9.1.)

② 학교의 장 이외의 교원은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한다.(변경 2016.9.1.)

③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면권자가 교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임용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계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변경 2016.9.1.)**

④ 이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에 기독교 신앙생활을 지도하기 위하여 교목을 둔다.

⑤ 제4항의 목사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이사장이 임용한다.

⑥ 제2항의 교원을 신규 임용함에 있어서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채용분야·채용인원·지원자격·심사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일간신문 또는 정보통신망·학교 홈페이지,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단 종교교사는 설립자 측의 추천을 받아 공개 채용을 통해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임용한다)(변경 2008. 2. 20, 2016.9.1)

⑦ 공개전형으로 채용하는 교원 임용에 있어서는 당해 학교의 건학이념을 구현하는데 필요한 요건을 갖춘 자로 제한 할 수 있다.

제34조의 1 (전형결과 공개) ① 교원공개 전형에 응시한 자가 전형결과 등에 관한 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신규 채용자 확정 전후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신설 2008. 2. 20)

② 제1항의 정보공개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내지 제17조를 준용한다.(신설 2008. 2. 20)

제34조의 2 (정년) ① 교원의 정년에 관하여 교육공무원의 정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교원은 그 정년이 달한 날이 속하는 학기의 말일에 당연히 퇴직한다.(개정 1994.4.18)

제34조의 3 (삭제 2012. 9. 1)

제2관 신분보장

제35조 (휴직의 사유) 교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

는 이사장은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4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변경 1975.10.17, 1983.11.11, 1999.10.27)

1.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요할 때
2.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 복무를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3. 천재지변 또는 전시 사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된 때
4.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
5. 학위 취득을 목적으로 해외 유학을 하거나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 또는 연수하게 된 때
6. 국제적 기구 또는 외국 기관과 재외 국민 교육기관에 고용된 때
7. 자녀(휴직신청당시 만8세 이하인 자녀, 취학 중인 경우 초등학교 2학년까지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변경 2008. 2. 20, 2014.6.30)

7-2. 만 19세 미만의 아동(제7호에 따른 육아휴직의 대상이 되는 아동은 제외)을 입양하는 경우 (신설, 2014.6.30)

8.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국내의 연구 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변경 2014.6.30)
9.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간의 요양을 요하는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간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
10. 배우자가 국외근무를 하게 되거나 제5호에 해당하게 된 때
11.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된 때(신설 2008. 2. 20)
12.「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제31조에 따른 재직기간 10년이상인 교원이 자기개발을 위하여 학습·연구 등을 하게 된 경우(신설 2016.9.1)

제36조 (휴직의 기간) 교원의 휴직 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제35조의 제1호에 의한 휴직 기간은 1년(「사학연금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로 한다.(변경 2014.6.30)
2. 제35조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 기간은 그 복무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로 한다.
3. 제35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 기간은 3월로 한다.

4. 제35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학위 취득의 경우에는 3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변경 2008. 2. 20)

5. 제35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 기간은 그 고용 기간으로 한다.

6. 제35조 제7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 기간은 자녀 1명에 대하여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여교원의 경우 임용권자는 3년의 범위 안에서 그 휴직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변경 2008. 2. 20, 2014.6.30.)

6-2. 제35조 제7호2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입양자녀 1명에 대하여 6개월 이내로 한다.(신설 2014.6.30)

7. 제35조의 제8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변경 2008. 2. 20)

8. 제35조의 9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재직기간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9. 제35조 10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3년의 범위 안에서연장할 수 있다. 다만 총 휴직 기간은 배우자의 국외 근무, 해외유학, 연구, 또는 연수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신설 2008. 2. 20)

10. 제35조 제11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그 전임기간으로 한다.(신설 2008. 2. 20)

11. 제35조 제12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재직기간 중 1회에 한한다. (신설 2016.9.1.)

제37조 (휴직 교원의 신분) ①휴직 중의 교원은 신분을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휴직기간 중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이사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이사장은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③ 법 제59조 제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직기간이 만료된 교원이 30일 이내에 복귀를 신고한 때에는 당연히 복직된다.

제38조 (휴직 교원의 처우) ① 제35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그 휴직기간 중 봉급의 7할을 지급한다. 다만 결핵성 질환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에는 그 휴직 기간 중 봉급의 8할을 지급하며, 직무상 질병으로 휴직한 경우에는 그 기간 중 봉급 전액을 지급한다. 또한,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휴직기간 중 봉급의 반액을 지급한다.**(변경 2008. 2. 20, 2016.9.1.)**

② (삭제 2008. 2. 20)

③ 제35조 제2호 내지 제4호와 제6호 내지 제8호,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봉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변경 2008. 2. 20, **2016.9.1**)

제39조 (직위 해제 및 해임) ①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교원에게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변경 2008. 2. 20)

②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교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변경 2016.9.1.**)

1. 직무 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 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또는 교원으로서 근무 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자
2. 징계 의결이 요구된 자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무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변경 2016.9.1.)

④ 제 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가 해제된 자에 대하여 봉급의 8할을 지급한다. 다만, 제1항 또는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 해제된 자가 해제 일로부터 3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할 때에는 그 3월이 경과한 이후의 기간 중에는 봉급의 5할을 지급한다.

⑤ 임용권자는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직위 해제된 자에 대하여 3월 이내의 기간 대기를 명한다.(**변경 2016.9.1.**)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 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임용권자는 능력 회복이나 태도 개선을 위한 교육 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 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변경 2016.9.1.**)

⑦ 제2항의 제1호와 제2호 또는 제1항의 직위 해제 사유가 경합하는 때에는 제2항 제2호 또는 제1항의 직위 해제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⑧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 중 능력의 향상 또는 개전의 정이 없다고 인정된 때에는 임용권자는 교원 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면직시킬 수 있다.(**변경 2016.9.1.**)

제40조의 1 (보수) 교원의 보수는 교육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한다.

제40조의 2 (명예퇴직 수당) ① 교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한 자가 정년 전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명예퇴직 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으며, 공적이 현저한 교원에 대하여는 특별 승진하여 퇴직시킬 수 있다.(변경 1994.4.18, 1995.2.23, 1996.10.1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원 중 교장이 임기 만료 전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 그 정년은 교육공무원의 정년에 관한 규정으로 정한 연령으로 본다.

③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는 대상자의 범위 및 수당 지급액은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 규정을 준용한다.

④ 수당의 지급절차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제41조 (의사에 반한 휴직, 면직 등의 금지) ① 교원은 형의 선고 징계 처분 또는 사립학교 법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 등 부당한 처분을 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학급 학과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교원은 권고에 의하여 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③ 교원의 징계처분 기타 그 사유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재심 위원회의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제41조의 1 (후임자 보충 발령의 유예)교원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되거나 근무 성적 불량으로 면직되었을 때에는 그 처분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의 발령을 하지 못한다.

제3관 교원인사위원회

제41조의 3 (교원 인사위원회 설치) 교원(학교의 장을 제외한다.)의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당해 학교에 교원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1조의 4 (인사위원회의 기능)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원의 보직에 관한 사항
2. 교원의 연수 대상자 및 포상 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
3. 기타 학교의 장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필요로 한다고 인정하는 사항
4. 공개 전형 시행에 관한 사항(신설 2008. 2. 20):별도의 전형위원 구성 시행

제41조의 5 (인사위원회의 조직) ① 인사위원회는 학교별로 학교의 장이 임명하는 10인 이내의 교원으로 조직한다.

② 인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 이내로 하되, 중임 할 수 있다.

제41조의 5 (인사위원회 위원장 및 직무) ①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학교의 장이 임명한다.

②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③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④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1조의 6 (인사위원회의 회의 소집등) ①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학교의 장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인사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1조의 7 (회의록 작성) ① 인사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당해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 위원 2인 이상이 서명 날인한다.

제41의 8 (인사위원회의 간사등) ①인사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② 간사와 서기는 당해 학교의 교직원 중에서 학교의 장이 임명한다.

제41조의 9 (운영 세칙)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이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이를 정한다.

제2절 교원 징계위원회

제43조 (교원 징계위원회의 조직) ① 교원 징계위원회는 7인의 위원으로 조직한다.(신설 1977.9.19, 2001.1.30)

② 교원 징계위원회 위원은 교원 또는 학교법인의 이사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다만, 학교법인 이사인 위원의 수가 위원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제44조 (교원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선출 및 직무) ① 교원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신설 1977.9.19)

② 교원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통리한다.

③ 교원 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5조 (징계의 결의 기한) 교원 징계위원회가 징계 의결 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하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 안에서 1차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46조 (제척사유) 교원 징계위원회의 위원은 그 자신에 관한 징계 사건을 심리하거나 피 징계자의 친족 관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 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못한다.

제46조의 1 (위원의 기피등) ① 징계 대상자는 교원 징계위원회의 위원이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

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 신청이 있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을 받은 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로 교원 징계위원회의 출석 위원이 재적 위원의 3분의 2에 미달되어 징계 사건을 심리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교원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의 수가 재적 위원 수의 3분의 2이상이 될 수 있도록 위원의 임명권자에게 임시 위원의 임명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46조의 2 (징계 의결 요구 사유 통지) 교원의 임면권자가 교원에 대한 징계 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징계 의결 요구와 동시에 징계 대상자에게 징계 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송부 하여야 한다.

제47조 (진상조사 및 의견의 개진) ①교원 징계위원회는 징계 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진상을 조사하여야 하며 징계의결을 행하기 전에 본인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다만, 2회 이상 서면으로 소환하여도 불응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② 교원 징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48조 (징계의결) ① 징계 의결은 재적 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행하여야 한다.(변경 1999.10.27)

② 교원 징계위원회는 징계 사건을 심리하고 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주문과 사유를 기록한 징계 의결서를 작성하고 이를 임명권자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③ 임명권자가 제2항의 통고를 받은 때에는 그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의결 내용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명권자가 법인인 때에는 징계 처분권을 이사장에게 위임한다.(변경 2008. 2. 20)

④ 징계 처분권자는 징계처분의 사유를 기재한 결정서를 당해 교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 교원 징계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49조 (징계 의결시의 정상참작 등) 교원 징계위원회가 징계 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 대상자의 소행, 근무 성적, 공적, 개전의 정, 징계 요구의 내용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제49조의 1 (징계 사유의 시효)교원 징계 의결의 요구는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

제50조 (교원 징계위원회의 간사등) ① 교원 징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변경 2008. 2. 20)

② 간사와 서기는 교원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당해 기관 소속 직원 중에서 그 임명권자가 임명한다.

제51조 (운영세칙)교원 징계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교원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절 재심위원회

제52조(재심위원회 설치) 삭제(1995.09.07)
제53조(재심위원회의 구성) 삭제(1995.09.07)
제54조(재심위원회의 위원장 선출 및 직무) 삭제(1995.09.07)
제55조(재심위원회의 심사) 삭제(1995.09.07)
제56조(심사의 범위) 삭제(1995.09.07)
제57조(재심 청구인의 진술권) 삭제(1995.09.07)
제58조(재심 청구의 취하) 삭제(1995.09.07)
제59조(재심위원회의 결정) 삭제(1995.09.07)
제60조(재심 심사결정서 작성) 삭제(1995.09.07)
제61조(재심 심사결정서의 송부) 삭제(1995.09.07)
제62조(재심 결정의 효력) 삭제(1995.09.07)
제63조(위원 수당 등) 삭제(1995.09.07)
제64조(재심위원회 간사 등) 삭제(1996.09.07)
제65조(운영세칙) 삭제(1996.09.07)

제4절 사무직원

제66조 (자격)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직원(교육행정원, 기술직, 고용원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일반직원"이라 한다.)으로 임용될 수 없다.(변경 2014.02.27)

1.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변경 2014.6.30)

2.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 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 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이 법인과 이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와 해임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② 일반직원의 신규 임용에 있어서는 학력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관리운영직 및 기술직은 임용될 직종에 관한 자격증, 면허증 기타 임용권자가 필요로 하는 자격이 있는 자를 인사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임용할 수 있다. (변경 2014.02.27)

③ 재직 중인 일반 직원이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제67조의 1 (임용) ① 일반직원의 신규 임용, 승진, 승급, 대우직원 선발, 근속승진, 전직, 전보, 강임, 휴직, 직위해제,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이하 "임용"이라 한다)은 임용권자가 공개 채용 전형 또는 근무 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변경 2003.12.3, 2014.02.2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에 있어서 그 시험과목, 방법, 절 차등에 관여하는 따로 인사 규칙으로 정한다.

③ 일반직원은 이사장이 임용하되 학교 소속 일반 직원은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이 있어야 한다.

제67조의 2 (정년) 일반직원의 정년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의 정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1995.2.23)

제67조의3 (명예퇴직) ①사무직원 중 사립학교에서 근속한 기간과 사립학교연금법 상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이고 정년퇴직일전 1년 이상의 기간 중에 있는 자로서 자진 퇴직하고자 할 경우 명예퇴직할 수 있다. (신설2010.11.22)

②명예퇴직 시행에 필요한 절차, 자격요건, 수당산정 공식 등 세부사항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 수당등 지급규정에 준한다.(신설 2010.11.22)

제67조의4 (특별승진)①정관 제67조의3에 의거 명예퇴직을 하는 자가 근무 중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자체 심사를 거쳐 특별승진 할 수 있다.(신설2010.11.22)

제68조 (복무) 일반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충청북도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규정을 준용한다.(**변경 2016.9.1.**)

제69조 (보수) 일반직원의 보수는 일반의 표준생계비 및 민간인의 임금 등을 고려하

여 직무의 난이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적당하도록 직급 및 근속 기간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인사 규칙으로 정한다.

제70조 (신분 보장) 일반직원의 신분 보장에 관하여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제71조 (징계 및 재심청구) ① 일반직원의 징계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하되 일반 직원의 징계위원회는 법인에 따로 두어야 한다.(변경 95.9.7)

② 일반직원의 재심 청구를 위하여 법인에 일반직원 재심 위원회를 두되 그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7장 직 제

제1절 법 인

제72조 (법인 사무조직) ① 이 법인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법인 사무과를 두고 과장은 5급(교육행정)으로 보하되 유지경영학교의 사무직원이 겸할 수 있다. (변경 1995.2.23, 2014.6.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 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2절 고등학교

제73조 (교장등) ① 고등학교에 교장 1인과 교감 1인을 둔다.(변경 2008. 2. 20)

② 교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학교를 대표한다.

③ 교감은 교장을 보좌하며 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74조 (하부조직) 고등학교에 행정실을 두고 그 분장업무는 규칙으로 정한다.(변경 1999.10.27)

제3절 중학교

제75조 (교장등) ① 중학교에 교장1인 교감1인을 둔다.

② 교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학교를 대표한다.

제76조 (하부조직) 중학교에 행정실을 두고 그 분장업무는 규칙으로 정한다.(변경 1999.10.27)

제4절 정 원

제77조 (정원) 각급 학교에 두는 일반직원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변경 1990.3.1., 1995.2.23, 2014.02.27)

제 8 장 학교운영위원회

제78조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초·중등교육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자문기구인 학교운영위원회를 본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에 구성·운영하여야한다.(신설 1999.10.27, 변경 2000.7.15)

제79조 (교원위원의 선출 절차) ①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의거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의 선출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민주적 대의 절차에 의해 정수의 2배수를 추천한다.(변경 2000.7.15)

② 학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추천된 자 중에서 교원위원을 위촉한다.

제80조 (학교규정에의 위임)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사항 중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 정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각급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변경 2000.7.15)

제9장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제81조 (학교교육분쟁위원회의 설치)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 제6조 제4항에 의거 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각급학교에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신설 2001.1.30)

제82조 (학교운영위원회규정의 준용) 위원회의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자격 상실, 기타 회의의 운영 등에 관하여 본 장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제8장 제80조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2001.1.30)

제83조 (운영세칙)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신설 2001.1.30)

제10장 (보 칙)

제84조 (공고) 이 법인이 이 법령과 정관 및 기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충청일보에 공고한다.(조번호 변경 1999.10.27)

제85조 (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조번호 변경 1999.10.27)

제86조 (설립 당초의 임원) 이 법인의 설립 당초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조번호 변경 1999.10.27)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77년 9월19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직원으로 임용된 자 중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이 정관 시행 이후 6월 이내에 당연 퇴직된다.

③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되어 사무조직에 근무

하는 사무직원이 이 정관에 의한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직원의 퇴직 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되 사무직원의 신규 임용은 그 초과하는 정원이 있을 때에는 채용하지 못한다.

④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1의 각 직급에 임용된 자는 이 정관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본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81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83년 1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85년 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86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재임 중인 이사는 그 임기만료시 까지 이 정관에 의하여 취임된 것으로 본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9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91년 1월9일부터 시행한다.
② (교원에 대한 경과 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근무하는 교원(학교의 장을 제외한다.) 및 일반 직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임면한 것으로 본다.
③ (교원 징계에 대한 경과 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교원 징계위원회 및 재심위원에 계류중인 징계 및 재심 청구 사건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 (일반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일반직원이 퇴직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되, 일반직원의 신규 임용은 그 초과하는 정원이 있을 때에는 채용하지 못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94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95년 2월23일 부터 시행한다.
② (일반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일반직원이 퇴직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되 일반직원의 신규 임용은 그 초과하는 정원이 있을 때에는 하지 못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1995년 9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1996년 10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1999년 10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 제2항·제4항의

변경규정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00년 7월15일부터 시행한다.
② (학교규정에 대한 경과 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시행중인 각급 학교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은 이 정관에 의거 작성된 것으로 본다.
③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및 위원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각급 학교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에 의거 선출된 위원은 이 정관에 의거 선출된 것으로 보며 위원의 임기는 임기만료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위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01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05년 9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08년 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사회 구성에 관한 적용례) 이 정관 시행 후 임원의 임기 만료 등으로 인하여 궐위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제15조의5항 개정 정관에 따라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임원을 선임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10년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② (명예퇴직) ①사무직원 중 사립학교에서 근속한 기간과 사립학교연금법상 재직

기간이 20년 이상이고 정년퇴직일전 1년 이상의 기간 중에 있는 자로서 자진 퇴직하고자 할 경우 명예퇴직할 수 있다.

②명예퇴직 시행에 필요한 절차, 자격요건, 수당산정 공식 등 세부사항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등 지급규정에 준한다.

③ (특별승진)①정관 제67조의3에 의거 명예퇴직을 하는 자가 근무 중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 자체 심사를 거쳐 특별승진 할 수 있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1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설립당초의 임원명단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임 기	주 소
이사장	배 근 영	23. 1. 1	4년	서울 특별시 중구 장충동 1가
이 사	오 천 해	23. 3.23	〃	충북 청주시 탑동 211
〃	안 광 국	09. 3.16	〃	서울 특별시 종로구 2가 91
〃	김 경 해	12. 1. 7	〃	충북 청주시 탑동 92
〃	박 중 철	25.10.10	〃	충북 청주시 서문동 190
〃	박 석 린	23.12.29	〃	충북 청주시 탑동 195
〃	고 성 만	30. 6.29	2년	충남 대덕군 회덕면 중리
〃	김 종 성	15. 3. 1	〃	서울 특별시 마포구 대흥동 산1
〃	박 영 재	08. 9. 9	〃	충북 청원군 북일면 마산리
〃	임 재 수	05. 1.27	〃	충북 청주시 탑동 195
〃	이 병 렬	19. 4.34	〃	충북 충주시 목행동 761
〃	이 진 옥	18.10.25	〃	충북 보은군 보은읍 삼산리
감 사	박 종 렬	22. 5. 3	〃	서울 특별시 중구 남산동 2가
〃	전 종 근	22. 2.22	1년	충북 음성군 금왕면 무극리

(별표)

학교 일반직원 정원

구분	직 급			인원
일신여자고등학교	합 계			5명
	일반직	행정직	5급 (교육행정)	1명
			6급 (교육행정)	1명
			7급 (교육행정)	1명
		관리운영 · 기술직군	8급 (사무운영, 시설관리)	2명
			9급 (사무운영, 시설관리)	
일신여자중학교	합 계			4명
	일반직	행정직	6급 (교육행정)	1명
			7급 (교육행정)	1명
		관리운영 · 기술직군	8급 (사무운영, 시설관리)	2명
			9급 (사무운영, 시설관리)	